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전단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재위탁할 수 있으며,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”를 “재위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및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<u>3년</u> 이내로 하되,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제22조(위탁기간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<u>재위탁할 수 있으며,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 <u>5년</u> ----- ----- ----- . ----- ----- 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위탁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재위탁 할 수 있다.</u></p>